

● **환경부령 제118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08월 07일

환경부장관 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자료를”을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분명세서”를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작성·제출”을 “작성·제출 또는 수정·보완”으로 “검토”를 “검토·변경검토”로, “환경부장관”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수정·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간, 검토결과서 통보, 수정·보완 요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제4항(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제4항 중 “환경부장관” 을 “화학물질안전원장” 으로 한다.

제5조의4제1항 본문 중 “제5조의2제4항” 을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를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등” 을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 이라 한다)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제13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을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을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 이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을 “유해화학물질등” 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등)” 을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 를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로, “사용·판매계획서” 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를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

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4조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 을 “법 제18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지물질” 을 각각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 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14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 을 “법 제18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제2호” 를 “제4항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 을 “제5항” 으로, “신청인” 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 으로 한다.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

2. 신고한 연간 예정량

3. 사업장의 상호·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과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 또는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허가받은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유독물질의 수입신고 등)”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독물질의” 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로, “유독물질 성분” 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유독물질” 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무실 소재지” 를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본” 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로 한다.

제18조제4항제3호 중 “사무실 소재지” 를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원본” 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하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을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 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나.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다.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나목에 따른 유

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제21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취급시설

- 가.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나.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정기검사”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로, “본문에 따른 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1년
- 2.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나위험도 및 다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년
- 3.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 4.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제2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23조제6항(중전의 제4항) 중 “발생”을 “발생하거나 발생”으로, “수시검사”를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제7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8항(중전의 제5항) 중 “1년”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중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정기검사, 수시검사) 결과신고서”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로 한다.

제23조제10항(중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안전원장
2. 제1호 외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내용·방법·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

⑪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 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제4항 진단 중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을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로, “안전진단결과신고서”를 “안전진단결과통지서”로 한다.

제25조제5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중 “누출감지장치”를 “누출검지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및 영업허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제27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제27조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 을 “제2항에 따른 신청” 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을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7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28조의 제목 “(허가증의 발급 등)” 을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을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 으로, “허가증” 을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허가증” 을 각각 “허가증등” 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5항” 을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허가” 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이 항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제29조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 를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고” 를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 로,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 을 “30일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라목의” 를 “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영업허가증 원본” 을 “영업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 이라 한다)” 을 “검사기관” 으로, “검사를” 을 “설치검사를” 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 를 “설치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 를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가목” 을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명칭 또는 사무실 소재지” 를 “명칭·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사업자등록증” 을 “사업자등록증명” 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대표자” 를 “사업장의 대표자” 로,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사업자등록증, 법 제30조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9조제7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5항”을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으로, “신청인에게”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변경신고”를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로 한다.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 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8조제7항”을 “법 제28조제8항”으로, “제6항에 따른 신고”를 “제7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로,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을 “허가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8항”을 “법 제28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호”를 “법 제29조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중전의 제7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로 한다.

7.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제19조제2항제4호 또는 제9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제31조의2의 제목 “(시약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을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호에 따라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사항에 관한 내용을 시약용기에”를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를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시약 판매업 신고 등)”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를”로,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에 제27조제1

항제2호 및 제3호”를 “신고서에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을 “해당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1. 제27조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27조제2항제3호의 서류(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의4의 제목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 등)”을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소재지”를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변경 신고서”를 “변경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확인증”을 “신고확인증”으로 한다.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별표 6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으로, “신고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2조제3항 단서”를 “법 제32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중 “10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로 한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 기관에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제1항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4와”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8조제1항”을 “이 규칙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내역서”를 “명세서”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허가증 원본”을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제52조의2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금지물질의 취급허가”를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로, “변경신고”를 “변경신고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허가 등”을 “허가 및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한물질 수입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영업허가”를 “영업허가,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시약 판매업 신고”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3조의 제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을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제5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항) 제8호 중 “영업허가 취소” 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독물질 등” 을 “유해화학물질등” 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을 “유해화학물질등” 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폭발 등” 을 “폭발 등” 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후단 중 “유해물질” 을 “유해화학물질” 로, “시설을 설치하여야” 를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취급해야” 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 중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시 상시 가동” 을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취급” 으로 하며, 같은 호 더목 중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된” 을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유출·누출된” 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을 “용기·포장” 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유출” 을 “유출·누출”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질이어야” 를 “재질 및 강도여야” 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바.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반”을 “상차·하차 및 운반”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라목2)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장”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경우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표시한 경우

별표 2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별표 3의2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목 중 “(제27조제3항 관련)”을 “(제27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5)다)를 라)로 하고, 같은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별표 6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2. 비고 제1호나목·다목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는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의3(중전의 별표 6의2)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별표 6의3(중전의 별표 6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2년마다 8시간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별표 7 제2호다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별표 7 제2호사목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5호”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 제10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6개월		
--	-----------------------	----------	-----------------	-----------------	--	--

별표 7 제2호과목의 행정처분 기준의 1차 위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령란 중 “법 제34조의2제6호” 를 “법 제34조의2제1항제6호” 로 한다.

영업 정지 5일

별표 7 제2호에 더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서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을 “법 제32조” 로 한다.

더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고를 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8 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15 호의2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

별표 8 제2호 중 “허가증” 을 “허가증 또는 신고증” 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내역서” 를 “명세서” 로, “허가 신청 시” 를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중 “유독물” 을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표 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을 “화학물질안전원장” 으로 한다.

별표 12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의3.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3의4.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의5.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의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별표 12 제4호의 종별란 중 “허가물질의 허가 및 재허가” 를 “허가물질의 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	--------------	--------------

별표 12 제6호의 종별란, 제7호의 종별란 및 제8호의 종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변경신고
7.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8.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

별표 12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4의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별표 12 제18호의 수수료란 중 “환경부장관” 을 “화학물질안전원장” 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청사항의 확인신청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확인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생태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청인란은 제조자, 수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 중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수입자란은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수입자 <input type="checkbox"/>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수입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수입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화학물질의 용도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다.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라.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매 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3서식 및 별지 제1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중 “유독물질” 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전자결제” 를 “전자결제” 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한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서식 신청인의 주소(사업장)란 다음에 주소(사무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별지 제24호서식 유독물질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신고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앞쪽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 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으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전자결제” 를 “전자결제” 로 한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제목 중 “유독물질” 을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증명번호” 를 “신고번호” 로 하며, 같은 서식 신고인의 주소(사업장)란 다음에 주소(사무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유독물질의 명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별지 제28호서식 신청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의 주소(사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으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전자결재”를 “전자결재”로 한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별지 제30호서식 신청인의 주소(사업장)란 다음에 주소(사무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별지 제31호서식 신청내용의 영업허가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허가 대상	<input type="checkbox"/> 영업허가 대상	<input type="checkbox"/> 면제대상
---------	----------------------------------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영업허가 대상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상세내용>란 중 “품목”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영업허가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	--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3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시약 정보 요약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판매업 상호(명칭)”를 “판매자 상호(명칭)”로 하며, “판매업 주소”를 “주소(사업장)”로 하고, “판매업 대표전화”를 “판매자 대표전화”로 하며,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유해화학물질등 정보”로 한다.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	<p>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그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되고,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혹은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p>
---------------------------	---

별지 제47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4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단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p>	
<p>신고인</p>	<p>(서명 또는 인)</p>
<p>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p>	<p>(서명 또는 인)</p>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으로 한다.

별지 제69호서식 사업장 경유하천란 다음에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중 “제조(수입/판매량)”을 “취급량”으로 한다.

용도	[] 국외로 전량 수출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	-----------------------------------

별지 제6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서식 중 “허가번호”를 “허가(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사업장 경유하천란 다음에 용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제조(수입/사용)량”을 “취급량”으로 한다.

용도	[] 허가받은 용도 [] 국외로 전량 수출용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표준가스 포함)
----	---

별지 제7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2호서식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유독물질수입”을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으로, “유독물질명”을 “인체등유해성물질명”으로, “유독물질 함유량”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함유량”으로, “유독물질번호”를 “고유번호”로 한다.

별지 제74호서식부터 제7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기한은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이 설치검사인 경우: 그 설치검사일
2.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이 정기검사인 경우: 그 정기검사의 기한
3.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이 안전진단인 경우: 그 안전진단을 받은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보다 짧아진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첫 번째 정기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 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의 경우 첫 번째 안전진단은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고, 두 번째 안전진단부터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첫 번째 안전진단 시기가 정기검사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 후에 예정된 첫 번째 정기검사 기한으로 연기하여 실시한다.

제4조(종업원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 제2호 및

별표 6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제6조(취급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검사결과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②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취급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호가목1)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항”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별표 2 제2호의 종류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의 대상범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5호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제1호 및 제2호나목 중 “유독물”을 각각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제1호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제2호나목 중 “유독물”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별지 제1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한다.

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2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호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같은 호 바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아목 위반사항란 중 “유독물”을 각각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을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5호에 해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유독물”을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⑥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0호, 같은 항 제18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9조제8항제11호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로 하고, 제28조의3제2항제1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⑧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7호다목4)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2 제9호다목1)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7호가목1)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으로 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배관설비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관설비 및 그 지지물 등이 물리적·환경적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 8)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유출·누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 9)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저감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유출·누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경보체계를 갖춰야 한다.
- 2)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유출·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3)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集水設備)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4)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바닥 또는 벽 등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채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 액체, 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배출설비를 갖추고,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7)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관리기준

- 가.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나.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다.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라.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 마. 운반과정에서 운반차량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 바.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한다.
- 사.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3. 그 밖의 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및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미세공정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용 대상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 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합한 수의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
 -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기준
 - 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 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 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 라)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 마)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 2) 영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사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2. 비고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는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3.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4.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 안전원장
5.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 원장
6.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 원장
7.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 원장
8.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9.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0.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1.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4.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5.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6.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7.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 의 장
18.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1.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3. 권리·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5.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 의 장
26.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 의 장
27.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 의 장
28.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29.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 의 장
30.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31.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32.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 제 조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제조 (수입)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제품명세	⑥ 확인방법 [] 성분명세서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제조사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수입제품 (상품) 정보	⑦ 모델·규격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전자우편			
⑧ 확인 내용	구분	함유여부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제조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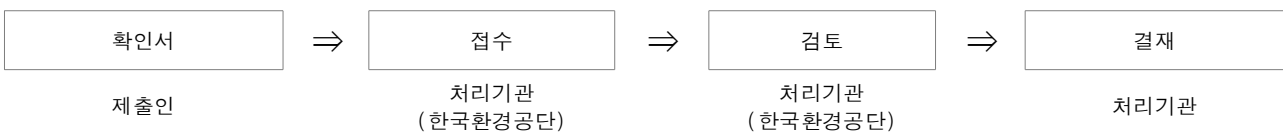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제출자란은 제조자, 수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 중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수입자란은 국내대리인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4.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6.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7.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8.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9.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10.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11.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12. ⑧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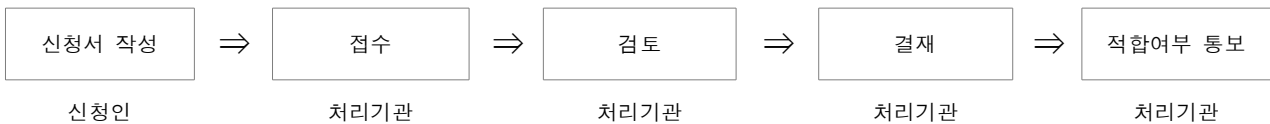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배출저감계획서 또는 수정·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	------------------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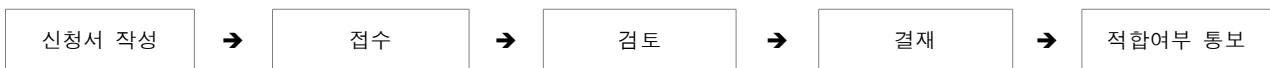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금지물질 제조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
 판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수출국			
	④ 주요 용도			
	⑤ 연간 예정량	kg		
	⑥ HSK No.			
	수입제품(상품) 정보	⑦ 모델·규격		
		금지·제한물질 함유 내용	⑧ 명칭	
			⑨ 금지·제한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⑩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 제조
 제한물질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판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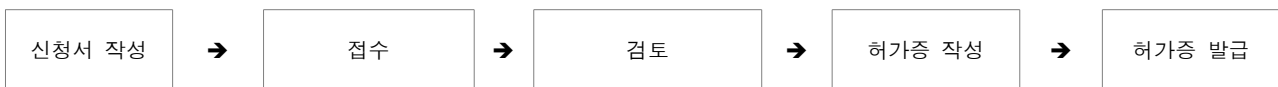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수출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⑤란은 연간 제조·수입 또는 판매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8. ⑧란부터 ⑩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9.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허가번호 [] 금지물질 [] 제조 [] 변경허가신청서
 제 호 [] 제한물질 [] 수입 [] 변경신고서
 [] 판매 [] 판 매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 정보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	
	수입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변경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금지물질 [] 제조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제한물질 [] 수입 [] 변경신고를 합니다.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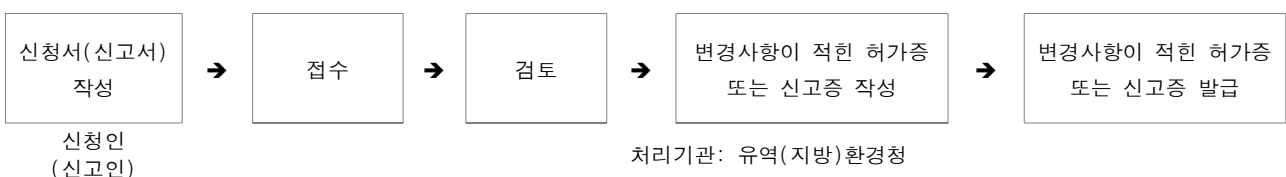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작성방법

1. 허가번호는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모델·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첨부서류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	----------------	--

작성방법

1. ①칸은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②칸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칸은 그 제품(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칸은 연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칸은 제품(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칸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칸부터 ⑩칸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고번호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판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증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제 품 명 (상 품 명)				
제한물질 함유 내용	제한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유량(%)			
연간 예정량		kg		
주요용도				
수입제품 (상품)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신고 <input type="checkbox"/> 판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 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 <input type="checkbox"/> 사용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신고번호

제 호

제한물질

- 제조
- 판매
- 수입
- 보관·저장
- 사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 정보	제품명(상품명)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규격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 판매, 수입, 보관·저장, 사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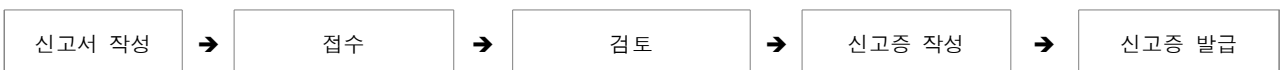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	---	--

작성방법

1.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조·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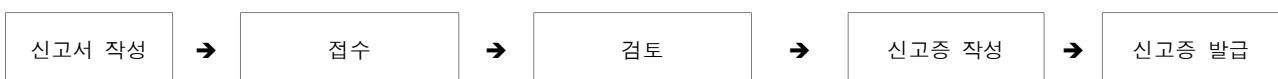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신고번호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 조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input type="checkbox"/> 수 입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증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		
제 호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수입자 <input type="checkbox"/>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조국(수입국)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 · 규격		
한정기간(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항·제9항 에 따라 위 물질의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증을 <input type="checkbox"/> 사용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을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display: inline-block; padding: 10px 20px;">직인</div>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	---	---

작성방법

1. ①칸은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②칸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칸은 그 제품(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칸은 연간 제조·수입·사용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칸은 제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칸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칸부터 ⑨칸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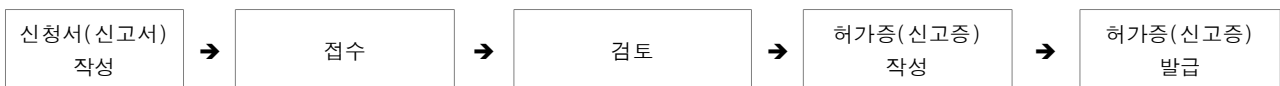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input type="checkbox"/> 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신고번호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 조 <input type="checkbox"/> 수 입 <input type="checkbox"/> 사 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증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
제 호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물질의 명칭					
제조국(수입국)					
제 품(상 품)정 보		제 품명(상 품명)			
		제 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 · 규격				
준수사항					
<p>「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7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제9항에 따라 허가물질의</p> <p> <input type="checkbox"/> 제 조 <input type="checkbox"/> 신고증 <input type="checkbox"/> 수 입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증 을 발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 용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년 월 일</p>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div>					

작성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검 사 사 업 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대상 취급시설(명 칭)		
	검사대상 취급시설 구분 [] 제조·사용시설 [] 보관시설 [] 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검사사유 [] 신규설치 [] 시설 변경		
	검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인	상 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_____)	

신청내용	연장신청 대상 취급시설(명 칭)					
	당초 정기검사 이행기간			연장 신청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합니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혹은 최근 3년간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아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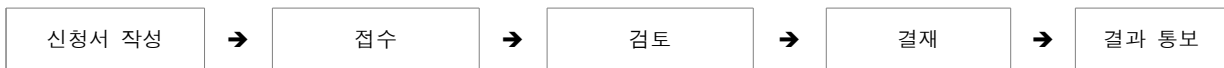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장

통지 번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		
제 호				
신 청 인	상호 및 사업장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연장대상 취급시설				
검토 결과		[] 승인 [] 불승인		
당초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된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p>「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p>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div>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정기검사 [] 수시검사 결과통지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 사 업 장	검사대상 취급시설(명 칭)		
	검사대상 취급시설 구분 [] 제조·사용시설 [] 보관시설 [] 저장시설 [] 운반시설 [] 기타		
	검사결과		
	취급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주요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정기검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 수시검사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진 단 사 업 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안전진단 대상 취급시설(명 칭)		
	안전진단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진단결과보고서
------	-----------

<p>첨부서류</p>	<p>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마.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사.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p> <p>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라.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p>	<p>수수료</p> <p>허가신청서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p> <p>신고서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p>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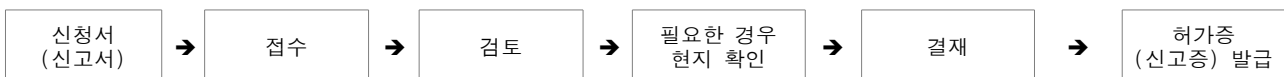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⑩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⑪란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를 적습니다.
- ⑫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 ⑬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 ⑭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⑮란은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각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적습니다.
- ㉑란 및 ㉒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 ㉓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제조 [] 보관·저장 [] 판매 [] 사용 [] 운반						
유해화학물질				용도	최대 보유량 (ton)	대상구분 (허가/ 신고/ 면제)	연간취급 예정량 (톤 또는 m³)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인체 급성유해성물질							
[]인체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대상구분(허가/신고/면제)란에는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과 비교하여 허가, 신고, 면제 중 해당되는 구분을 기재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제조업 [] 판매업 [] 보관·저장업 [] 운반업 [] 사용업 [] 허가증 [] 변경허가증 [] 신고증	
신고인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 없음 [] 자가 [] 위탁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최대보유량 합계	톤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 ³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m ²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m ³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 ³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억원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m ³ , m ²)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관리자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허가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제조업 [] 판매업 [] 허가증 [] 보관·저장업 [] 변경허가증 [] 운반업 [] 신고증 [] 사용업 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유해화학물질>

일자	유해 화학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용도	최대 보유량 (톤)	취급시설 보유 여부	대상 구분 (허가/신 고/ 면제)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허가 [] 변경허가신청서
 [] 신고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영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변 경 사 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 허가의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고의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 대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신고의 변경신고서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소재지(사실상의 소재지를 포함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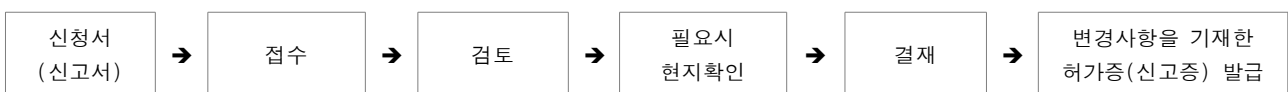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허가 **변경신고증**
[] 신고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사업장):
5. 주소(사무실):
6. 허가/신고번호:
7. 변경신고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서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①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ℓ
	④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m ³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m ³
	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⑦ 종업원 수	명	⑧ 사업장 면적	m ²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m ²) 및 용량(m ³),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 판매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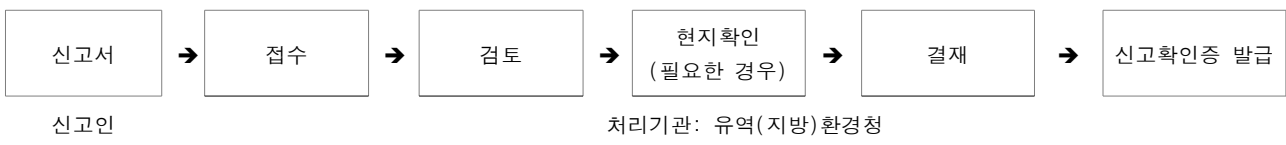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3.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4.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신고번호 []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 호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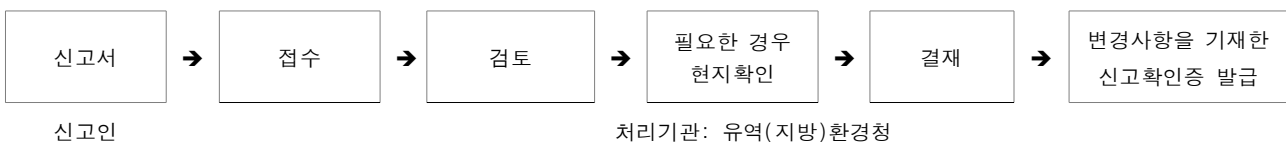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 1.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 부여된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가동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 고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 고 사 항	영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시약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휴업 <input type="checkbox"/> 가동중단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가동중단 사유			
	가동중단(재개) 취급시설			
	휴업·폐업, 가동중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시설을 [] 휴업, [] 폐업, [] 가동중단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신고증 원본(전자 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4. 사후 신고 사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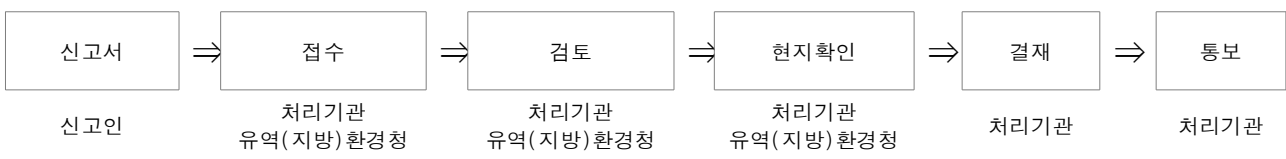
작성방법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210mm×297mm[백상지 80g/㎡]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승계 사유	

신고사항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영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의 공동 활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위 첨부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허가번호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 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관리자
 [] 취급시설 의 공동활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국내대리인 [] 선임 [] 해임 사실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임(해임) 업무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 등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 물질 정보	화학물질 확인	제품명(상품명)	
	화학물질 허가신청 등	허가물질명[명칭,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품명(상품명)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 선임 [] 해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사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작성방법

-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제품명(상품명) 또는 허가물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제 호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사업장):
5. 신고내용: [] 선임 [] 해임
6. 국외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7. 제품명 및 허가물질명: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판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 <input type="checkbox"/> 사용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용도		<input type="checkbox"/> 국외로 전량 수출용 <input type="checkbox"/>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명	제한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제한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화학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유량(%) :	1.	2.	3.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수입·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수량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용도			구매자영업허가구분	

비고: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한 영업의 업종을 적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 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유량(%) :	1.	2.	3.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 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유량(%) :	1.	2.	3.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않은 용도로 취급하려는 경우 및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31호, 2024. 2. 6. 공포,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제한물질 및 허가물질의 취급 신고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